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10호

2022년 2월

전문가 기고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이슈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ESG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주요 통계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영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경영의 화두로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에 의한 기회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ESG라는 용어는 2005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그 역사가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ESG에 대한 시각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은 블랙락(Blackrock) 등 선두 금융회사들의 ESG투자 드라이브에 기인하고 있다. 연기금, 운용사 등이 ESG투자 철학을 강조하면서 기업들 사이에 맞춰 ESG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ESG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더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글로벌 연계성과 공급망의 관점에서 ESG 경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2021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인 6,4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도 6,15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무역순위가 8위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수출이 확대되면 이와 연계된 수입도 증가하는 생산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간접수출 기업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ESG 경영의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규정짓는 첫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 그리고 2021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거치면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EU가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

함한 주요국들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2021.7.14.일 입법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하였다. 요지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EU로 수출하는 6개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장치 대상 품목확대와 간접배출 포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탄소중립 기초의 글로벌 확산은 그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연계된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린 공급망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이다. 양국 갈등은 통상을 넘어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패권경쟁과 기술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미중간 전장(戰場)은 첨단기술, 공급망, 인권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미국은 첨단기술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등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결속을 더욱 다지고 있다. 양국은 인권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21.12.23.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했다. 미중간 경쟁은 이제 가치동맹과 진영의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ESG는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높은 ESG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진국 중심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유럽의회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ESG 관리는 개별 기업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모든 파트너에게 중요해질 것이고,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동향



김예나 연구원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통해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 이슈가 부각되면서 TCFD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① 주요국 정보공개 법제화 동향

유럽연합(EU)의 정보공개 법제화는 2014년 집행위원회가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제정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근로자수 및 자산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인권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 및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공시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제안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기존 NFRD에 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항목과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CSRD는 2024년부터 EU 역내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EU의 NFRD 이행을 위해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인권 등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도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 정보공개 요건(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을 의무화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법안(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에는 ESG 공시 간소화, 기후 리스크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비재무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는 증권법, 기업법 등을 통해 지배구조 및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은 상장기업에 대해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국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사례

EU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2014)	·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등) · 환경, 사회, 인권, 반부패 등 공개 의무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2019)	·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상 ·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2021 제안)	· 2024년 시행 예정 ·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초소형 등 제외) 대상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개정(2016)	· 환경, 노동, 사회, 인권, 반부패 등 비재무정보 공개 사항 확대
미국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 하원 통과(2021)	· ESG 공시 간소화법, 기후 리스크 공시법 등 포함

※ 자료 : UNGC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

② TCFD 권고안 준용 현황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이슈별로 추진되기도 하고,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의무화하면서 표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환경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표준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다. TCFD는 2015년 G20의 요청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 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TCFD 권고안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가 지지를 선언하는 등 TCFD는 기후 변화 관련 정보공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가 TCFD를 준용한 공시 기준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U의 경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TCFD 권고안을 포함한 여러 공시 기준을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환경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FD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TCFD 권고안을 준용한 '지속가능 정보공개 요건(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을 대부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환경성·금융청이 공개한 '기후변화금융 기본 지침'은 기업들에게 TCFD 권고안을 참조한 정보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환경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금융기관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TCFD 권고안을 준용한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러한 동향을 주시하고, 정보공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TCFD 권고안 준용

주요국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채택(2024년 시행 예정) - CSRD에 TCFD 권고안 등 보고 표준 반영 예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정부 지속가능 정보공개 요건(SDR) 도입 발표('21.7월) - SDR에 TCFD 권고안 등 보고 표준과 영국 택소노미(UK Taxonomy) 반영 예정 - 대부분의 기업에 SDR 기준 정보공개 의무화(2025)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금융청 기후변화금융 기본지침 공개('21.5월) - 기본지침에서 기업에 TCFD 권고안을 참조할 것을 권장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통화청 환경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공개('20.12월) - 금융기관의 TCFD 권고안 등에 따른 정보 공시 권장 • 2022년 6월부터 은행·보험사·투자사 TCFD 권고안 준용한 기후 정보 공시 의무화 예정

※ 자료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이준영 객원

최근 ESG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앞다투어 경영 전략 내 ESG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과연 철강산업에는 어떠한 ESG 이슈들이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①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ESG는 모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철강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철강산업 특성상 타 산업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들의 공급망 ESG 평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철강산업에 요구되는 ESG 수준도 점점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다.

EU는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권고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EU에서는 공급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권 실사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EU는 2020년부터 공급망 실사 법제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실사 의무화 권고안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이다.(2021.3)

권고안은 기업들에게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사 의무 대상은 금융을 비롯해 모든 산업에 속한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기업 또는 고위험 분야에 속한 기업이 포함된다. EU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EU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망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공공조달, 국가 지원, 대출, 수출 신용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EU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권고(안) 주요 내용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등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평가, 해결, 방지하기 위해 실사 진행 공급망 대상 고충처리 프로세스 구축, 피해 구제, 주요 법률 위반사항 입증 의무 강화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회원국 내 대규모 기업, 고위험 분야에 속하거나 상장된 중소기업 (EU내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포함)
실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사업장, 사업과 관계된 범위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총매출액별 비례적 벌금 부과 공공조달, 국가 지원, 대출, 수출 신용기관 등의 지원 제재 (일시 또는 무기한)

이번 '철강 산업 ESG 경영전략'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②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국경세는 국가별 규제 강도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량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를 고려 중이며, EU는 2023년부터 3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할 예정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탄소국경세) 초안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 철강, 비료, 전기 산업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 싱크탱크인 샌드백은 EU 탄소국경세로 인해 2035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대 3억 4,200만 유로(약 4,622억 원)로 전망했다.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 우선적용 대상 산업에 속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보아 기업들이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은 철강산업의 경우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사용 및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은 물론 탄소국경세가 원가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생산 및 수출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ESG 정보공시 의무화

2021년 1월, 금융위에서는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시작하여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에게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거래소에서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발표하여 ESG보고서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게 정보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EU에서는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제안하며, 정보공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CSRD 주요 특징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 중소기업과 EU내 상장되어 있거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역외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두고 있어 많은 회사들이 공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시된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의무화, XHTML 포맷에 따른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들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요구 받는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한편, 내부 ESG 활동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8,005	2	9,214
시멘트	0	24	0	8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공개



김예나 연구원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이고,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제시한다.

녹색부문에서는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등의 분야에서 64개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비탄산염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조 활동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물질 등을 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을 포함한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전환하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원자력의 경우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포함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수소 등을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철도·선박·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운영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제시했다. 도시·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전환부문에서는 5개 경제활동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이다. 전환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경제활동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하고, 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녹색분류체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활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주요 녹색경제활동

분야	설명
산업	·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혼합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 등
발전·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 전기 및 열,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송	· 무공해 차량·철도·선박·항공기 제조 ·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및 육상·철도 운송 ·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도시·건물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건설 및 리모델링 · 건축물 관련 온실 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등

※ 자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이진 연구원

정부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사용주기를 연장하는 경제모델이다. 순환경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생산·유통·폐기 등 순환 단계별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원료 및 제품 생산의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종이, 유리, 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2030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

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유통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고, 유통사업자의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의무화도 검토한다.

1회용 봉투 사용 금지 일정

~'22년	제과점,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25년	도·소매업(33m ² 초과), 음식점·주점업
~'30년	전 업종

폐기 단계에서는 폐자원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부품, 복사기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하고 있는 재제조(Remufacturing)를 올해부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순환경제 이행계획	개정 내용
자원 순환성 강화 (생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원료 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 : (기존)종이·유리·철 → (개정)플라스틱 등 추가 - 재생원료 사용시 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 감면 ·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환경표지 인증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 추진 등)
친환경 소비 촉진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30) 및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 금지 확대 · 유통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및 포장용기 재사용 활성화
폐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연·원료화 · 재제조 허용품목 네거티브로 전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SG 통계 지표

2022년 1월 3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월
녹색채권	21	31	122	122	131	135	144	145	151
사회적채권	178	471	663	689	710	747	765	788	794
지속가능채권	8	44	144	162	178	181	199	216	230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월
녹색채권	21	30	129	128	139	141	148	148	156
사회적채권	246	736	1,079	1,125	1,166	1,214	1,247	1,273	1,283
지속가능채권	21	54	129	141	153	154	165	175	180

2. ESG 평가

서스틴베스트 연도별 ESG 등급 분포

(단위 : 개)

평가년도	AA	A	BB	B	C	D	E	Total
2019년	57	139	283	209	241	56	22	1,007
2020년	80	164	288	195	198	56	18	999
2021년	112	185	295	157	194	44	17	1,004

3. 기타 통계

UN PRI* 서명 회원 수**

(단위 : 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세계 (한국 포함)	1,097	187	281	374	624	911	1209	65
한국	3	1	1	1	1	3	9	8

* 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책임투자원칙)

** 2022년 1월 기준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3월	공급망 관리(Due Diligence) 의무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석유화학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자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자동차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유통

7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주요 환경 정책의 경제성 분석
8월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주요국의 자연자본 보전 정책
9월	플라스틱 규제 동향 및 과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동향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takim@korcham.net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이준영 객원
T. (02)398-7670 | E. jylee@kpc.or.kr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공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takim@korcham.net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